

●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-3호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「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기준 정비 및 공정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 합리화 및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재정립

2. 주요내용

가. 환기설비의 설치 예외 적용 방안 마련 및 설치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

나.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

3.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nics.me.go.kr)의 자료실-법령정보 확인